

工業所有權審判事例

權利範圍確認

<大法院 第3部 判決>(1985. 7. 23)

事件番號 : 85후 51

裁判長 : 강 우 영

關與法官 : 윤 일 영 · 김 덕 주 · 오 성 환

1. 審判請求人(上告人) : 손 종 해 (경북 영일군 기계면 지가 1동 703)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 태림농산(주) 대표 임태식
3. 原審決 : 特許廳 1985. 2. 27字, 1983年 抗告審判(當) 第24號 審決
4. 主文 : 原審決을 파기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로 환송한다.
5. 理由 : 上告理由를 判断한다.

記錄에 의하면 원판서(가)호 說明書에 기재된 菌體酵素飼料의 製造方法은 균체 단백질 사료 첨가물의 製造方法에 관한 원판서 이事件 特許(特許 第11477號)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確認을 구하는 審判請求인의 이事件 審判請求에 대하여 原審決은 審判請求人은 축산양돈업에 종사하는 자일뿐 飼料를 製造하여 販賣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飼料業者가 아닐 뿐만 아니라 販賣의 목적으로 사료를 製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事件 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理由로 이事件 審判請求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特許權者를 상대로 하여 어떤 對象物이 特許權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内容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特許權의 權利範圍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紛爭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製造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에 한하지 아니하고 業으로서 그 대상물건을 製造 使用하거나 하려는 者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記錄에 의하면 審判請求人은 축산양돈업자로

서 원판서(가)호 說明서에 기재된 菌體酵素飼料의 製造方法에 따라 製造한 사료의 功能을 試驗한 뒤 자신이 사용하여 販賣하려는 데지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製造工場을 마련하는 等 生產設備을 하고 있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審判請求인의 주장과 같다면 審判請求人은 業으로서 원판서(가)호 說明書에 기재된 菌體酵素飼料의 製造方法에 의하여 生產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審判請求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적법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原審이 이점에 관하여 審理도 하지 아니하고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審判請求人은 이 事件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事件 審判請求를 각하하였음은 權利範圍 確認 審判請求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理由이다.

그러므로 原審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로 환송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일치된 意見으로 위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终)